

(제85회 - 산업건설 제7차)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일자 : 2004.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관리를 공기업 방식으로 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하수도사업에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용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영주시 행정구역내로 함(안 제3조)
- 나.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특별회계의 명칭은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함(안 제10조)
- 다.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라.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마.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이익적립금이나 배당납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함(안 제18조)
- 사. 하수도사업과 관계된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9조)

- 아.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지급 운영보고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0조)
- 자. 관리자는 매년마다 2회에 걸쳐 관련서류를 첨부한 업무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공포하도록 함(안 제21조)
- 차.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

3. 자치법규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하수도 지방적영기업 전환 계획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하수 및 그 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영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영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명칭은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영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제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

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정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 ③(채권·채무의 승계)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중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 ④(자본금)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 ⑤(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전환 계획

- 2002년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시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미추진에 따른 시정지시 처분
- 2003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전환 학술연구용역 수행

□ 현 황

- 하수도 처리인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 구 수	101,527	100,483	99,454	98,437

- 하수처리구역 : 22.85km²
- 직제 및 현원 : 2사업소 3담당 31명
 - 수도사업소 : 하수담당 5명
 - 환경사업소 : 관리담당, 운영담당 26명
- 시설현황
 - 하수처리장 : 1개소 40,000m³/일
 - 하수관거 : 374km(보급율 67.9%)-합류식 265km, 분류식 109km
- 하수처리 현황
 - 하수처리량 : 15,769천m³
 - 하수부과량 : 8,019천m³(처리량의 50.8%)
 - 슬러지처리량 : 4,776톤

□ 행정사항

- 관련법규 : 공기업법 제2조 1항(하수처리장시설 설치시)
- 2002년 정부합동 감사시 지적 - 공기업으로 전환 시정지시
- 2003년 지방직영기업전환 관련 학술용역 시행 - 2003. 5. 6 ~ 8. 4

□ 지방직영기업전환시 문제점

- 재정적인 측면(2003년 기준)

(단위 : 천원)

하수도사용 량(천톤)	하수수익	판매단가 (원/톤)	총팔원가	생산원가 (원/톤)	결합액	인상요인
7,167	1,123,224	156.7	3,211,557	448.1	<u>2,088,333</u>	186%

- 조직적인 측면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 현원 5명 → 신설 6명(공기업전담요원)
 - 환경사업소(운영담당) : 현원 15명→신설 17명(수질담당 보강)

□ 대 책

- 재정적인 측면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 500,000천원/년
 - 하수처리장 운영비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 : 500,000천원/년
 - 나머지 부족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
- 조직적인 측면 : 우선 공기업전담요원 특채(1명)
 - 환경사업소(운영담당) : 현원 15명→신설 17명(수질담당 보강)

□ **경북도내 하수도공기업전환 현황**

- 공기업전환 시·군 : 경주, 구미시(2개시)
- 전환대상 시·군 :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울진(12개 시·군)